

칼럼

장기채 주필



무더진 애국심 속에서 맞는 호국 보훈의 달

우리는 지금 2019년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무더진 애국심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다.

문득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모윤숙의 시 한 구절이 생각난다.

내게는 어머니, 아버지, 귀여운 동생도 있었노라 / 어여빠 사랑하는 소녀도 있었노라 / 내 청춘은 봉오리지어 가까운 내 사람들과 함께 / 이 땅에 피어 살고 싶었노라, 아름다운 저 하늘에 무수히 나르는 내 나라의 새들과 함께 / 나는 자라고 노래하고 싶었노라 / 나는 그래서 더 용감히 싸웠노라 / 그러다가 죽었노라...

하지만 지난 역사 속에 이나라 지키고자 죽어간 국군을 기억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그렇다.

그들이 하고자 했던 수많은 말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

것이다.

60년 전 북한은 6·25 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을 일으켰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상 속에 희생됐고 40만 이상의 국군이 전장에서 산화했다.

온 국토는 일제 강점하의 차욕을 채 씻어내기도 전에 다시금 만신창이가 됐다. 북한은 6·25 이후에도 우리를 상대로 거의 50여 건이 넘는 테러를 자행해 왔다.

1968년 1·21정와대 기습을 비롯해 ‘아용산 폭탄테러’, ‘KAL 기 폭파’ 그리고 ‘강릉 무장공비 침투’ 등 일일이 언급하기도 힘들다. 이 밖에도 무모한 핵실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을 통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위협해왔다.

특히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우리의 안보현실과 국방태세를 다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체감하는 북

한에 대한 위협은 너무도 미미하다. 실제로 우리 국민은 설마 전쟁이 다시 일어나겠냐는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유월은 분명 우리들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뜻 깊은 달이다. 오는 6일 현충일은 진혼의 나팔 소리가 온 산하에 메아리치면서 소복의 긴 행렬이 이른 아침부터 제단 앞에 분향을 올리는 날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헤마다 맞는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나라와 겨레의 의미가 울리는 더욱 절실하게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는 정치판의 혼탁 등 정국의 혼미 속에서, 그리고 생활

진실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동안 잠시나마 망각할 수 있는 현충일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현충일 하루 만이라도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그런 날이어야 한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목숨 바쳐 싸운 애국선열들의 값진 희생 앞에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어야 한다. 그 영령들의 넋은 비록 멀어졌지만 조국의 오늘과 내일이 어떠한가를 남아있는 우리와 함께 바라보는 엄숙한 비명(碑銘)이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외로울 수 없으며 이념은 헤마다 새로운 것으로 발전해야 한다. 조국은 아직도 분단 상태이지만 오늘 우리가 어깨를 겨누면서 독립과 자유, 민주 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의 대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기에 현충일을 결코 나라를 위해 신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충혼 앞에 꿇다발을 바치고 묵념을 올리는 연례적 행사로 지나쳐서는 안된다. 애국심을 증시하는 미국에서는 국립묘지가 역사교육의 현장이자 관광명소라고 한다.

이제라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내 가슴에 새겨진 태극기를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한다. 죽음으로 말한 것을 들을 줄 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개숙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한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빈다.

社說

폐기물 처리기준 강화해야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면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다니 개선이 될지 기대가 크다. 방치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최근 국회에서 ‘폐기물 불법 처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불법 폐기물 배출자의 책임 근거를 명확화·세분화해 불법 발생을 예방하는 동시에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페플라스틱 등 일부 관리대상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차단을 위해 상대국 통의를 전제하는 ‘허가제’ 전환과 부당 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양도·양수, 합병·분할, 경매 등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되면 종전 명의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개선안은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해 대행자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차

단기로 했다. 또 불법 폐기물 배출·운반·최종 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돼 범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를 처리 책임자로 확대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폐기물을 운반한 운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행위로 인한 처벌도 강화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 위반자는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인한 이익 초과분과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기준을 위반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자는 과징금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 신설도 검토 중이다. 또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이 가능해지고 대집행 중 가압류 신청 등 비용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법 개정으로 불법 처리 처벌 강화와 부당 이익 환수로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右通廣內

右通廣內

▷ 뜻: 오른쪽에 광내(廣內)가 통(通)하니 광내(廣內)는 나라 비서를 두는 집임.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details.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안전과 행복 지키기 생활화 해야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7년간 차량 화재가 3만 784건이 기록됐다고 한다. 이는 하루 평균 13건의 수치이며 5인승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로 절반에 가깝다.

이처럼 5인승 차량 화재 비율이 높은데도 현행 규정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

자동차 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자동차 화재 안전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첫째,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을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용 소화기’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뺐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11인승 미만의 차량은 소화

기 설치 위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상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정권고 대상 차량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 검사관리 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기 시정권고사항을 미 이행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부과,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여객 운수 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 ‘차량

화재 예방 및 대처 방법’ 과목을 신설하도록 해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 구입 시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실제 화재 발생 시에는 당황한 나머지 사용방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법이 간단한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자동차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처를 위한 것으로 가벼운 화재 시에는 즉각적인 사용을 해야 하나 엔진 등 자동차의 주요 부위에서 불길이크게 번진 경우에는 무리해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차량으로부터 멀리 대피해야 한다.

진지혜 / 무안소방서 구급반장

Advertisement for '换位思考' (换位思考) featuring two women and text about understanding others' perspectives.